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999. 4. 15
교육사회위원회

1. 제 안 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제안및회부일자

○ 제 안 : 1999년 4월 1일 제출

○ 회 부 : 1999년 4월 1일

3. 제안이유

○ 외국인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책임성의 제고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 정부에서는 지난 98. 7.16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하고, 99. 1.21 지방재정법을 개정 공포하였는 바,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대상 확대 (안 제22조)**

- 현행 중요재산의 매각시만 분할납부가 가능하나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토지 매각시
  .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점유 사용자에게 매각할 때
  .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가, 저소득층에게 소규모토지를 매각할 때
  .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한 경우등을 추가하여 경제여건으로 인한 매각대금의 연체 및 이자부담을 줄이고자 함

○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인하 (안 제23조)**

- 학교급식 실시에 따라 학생들의 급식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급식용 재산은 1000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는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 외국인투자의 활성화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이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대부료를 1000분의50에서 1000분의10으로 인하하고자 함

○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 특례인정 (안 제23조의3)

- 공유재산 사용시 사용료 감면
  . 전액감면 : 외국인 투자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제조업,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 이상인 제조업, 전체 생산량의 50%이상 수출하는 업체로 부품은 100% 국내에서 조달하는 외국기업 등
  . 일부감면 : 전액감면에 비하여 투자액 및 고용효과 등이 낮은 외국인 기업을 대상으로 차등 적용

○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산출방식 개선 (안 제25조)

- 현재까지 건물의 사용료 산출시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건물부지 사용료를 건물바닥 면적의 3배에 대한 재산가액으롤 산정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담하게 함에 따라 과다한 사용료 납부에 따른 부담이 있었으나 건물의 실제사용 비율에 따라 면적을 계산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여 사용인의 부담을 경감코자 함

○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규정 (안 제28조)

- 현행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은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율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은행의 종류별 연체요율이 상이하고 수시 변경됨에 따라 연체요율 기준을 15퍼센트로 규정함

○ 관사 관리

ㅇ 관사정의중 "본청 및 청·소의 장 또는 간부직 공무원"을 "교육감, 부교육감, 청소의 장 및 소속공무원" 으로 함 (안 제45조)

ㅇ 관사 사용료 면제대상 확대 (안 제52조)
  - 현행 관사 사용료를 면제하는 대상이
  .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되어 있으나
  .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함

5. 검토의견

○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정리하고, 외국인투자촉진 및 공공부문의 예산절감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일반 지방자치단체 조례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기준을 조정하는등 조항별로 타당하게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사료됨

○ 다만, 본 조례안 8장 관사관리중 제45조 관사정의에 있어 "소속공무원"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한데 대한 검토와 제46조 관사구분중 3호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